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4. 21 선고 2021가단8510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박재명

피 고 1. 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이

변 론 종 결 2023. 3. 17.

판 결 선 고 2023. 4. 21.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19. 4. 7.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52,857,14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52,857,142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피고 A와 C 사이에 2019. 4. 7.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 A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채권

D 주식회사(이하 D)는 C을 상대로 대여금의 소(이 법원 2013가소119550)를 제기하여 2013. 10. 1. ‘C은 D에게 15,209,863원과 그중 14,728,335원에 대하여 2013.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8.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선행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0. 30. 확정되었다.

D은 2015. 4. 29. 원고에게 위 판결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5. 6. 17.경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C의 상속재산분할협의

C의 아버지 E은 2019. 4. 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A, 자녀들인 C, 피고 B이 있으며,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있었다.

C과 피고들은 2019. 4. 7.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이하 부동산①)은 피고 A가,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이하 부동산②)은 피고 B이 각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2019. 7. 31. 피고 A는 부동산①에 관하여, 피고 B은 부동산②에 관하여 각 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각 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양수금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위 양수금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채권양도통지의 적법성 [배척]

피고들은, D이 C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적법하게 통지한바 없어서 원고는 제3자인 피고들에게 양수금채권으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법 제450조 제1항에서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이 채권자가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나 채무자가 변동된 주소의 신고의무를 게을리 하는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 통지를 수령하지 못할 경우 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까지 부정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다41204 판결 참조).

갑 제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의 C에 대한 대출거래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되는데, D 표준 여신거래 기본약관은 채무자는 주소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D에 신고하여야 하고(제19조 제2항, 제1항), 채무자가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D이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제21조 제2항)고 정하고 있는 사실, C은 여신거래 기본약관의 약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 사실, C이 국외로 출국 후 자신의 변경된 주소를 D에 신고하지 않아서 D이 2015. 6. 10.경 선행판결에 기재된 C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D이 C에 발송한 채권양도통지서는 2015. 6. 10.로부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 C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권양도통지가 유효하지 않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는 변경된 주소의 신고의무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약관의 설명의무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규정취지에 비추어 위 조항 내용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라 볼 수 없으므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은, 채권양도통지는 반드시 우편물로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신청서 등에 기재된 C의 다른 연락 수단인 이메일, 휴대폰 번호 등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송달이 안 될 것이 뻔한 주소지, 즉 공시송달로 진행된 선행판결에 기재된 C의 최후 주소지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는바, 이는 서로 간 신의칙에 부합하도록 노력할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채권양도통지의 효력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신의 변경된 주소를 알리는 것이야말로 신의에 맞는 행동이라 할 것인바, 변경된 주소도 알리지도 않고 출국한 채무자의 주소를 어떤 방법으로든 알아내거나, 다른 방법으로 연락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채무자의 사해의사

(1)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①, ②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①, ②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인 각 2/7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C은 이로 말미암아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C에게 위와 같은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 [배척]

피고들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상속재산 중 이 사건 ①부동산의 시가는 약 2억 원이고, 이 사건 ②부동산의 시가는 약 1억 4,000만원에 임대보증금반환채무가 3,000만원이 있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은 약 3억 1,000만원이므로, C의 상속지분의 가치는 9,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1억 원을 지급한 것은 매우 합리적이다. 따라서 위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사해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한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이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17937 판결 등 참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금전의

성격에 비추어 상속재산 중에 위 부동산 외에 현금이 다소 있다 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등 참조).

을 제2호증에 의하면 피고 B이 2019. 10. 25.부터 2019. 10. 26.까지 합계 1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돈이 가사 피고들 주장과 같이 협의상속에 대한 대가라 하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C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①, ② 중 자신의 상속지분을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 것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나) 피고 A의 선의항변 [인용]

피고 A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선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F생인 피고 A는 1984. 1. 12.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둔 망인과 혼인하여, 망인이 2019. 4. 7. 사망할 때까지 약 25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한 점, ㉡ 피고 A는 망인이 위 피고와 혼인생활 중인 2015. 9. 30.경 부동산①을 취득한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데, 혼인생활 중 부동산①의 취득 및 유지에 상당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 망인의 상속인들 중 C 뿐만 아니라 피고 B 역시 부동산①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한 점, ㉣ 노년부부가 어떤 집에서 살던 중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이 남은 부모에게 상속재산협의분할의 방식으로 그 부동산을 단독상속하게 함으로써 노후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고, 이는 우리 사회의 도덕관념에 부합하는 관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매매증여 등 전형적인 사해행위의 양태와 달리 처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선행 사건을 필요로 하고 그 결과에 있어서도 채무자의 기득재산을 적극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그 증가를 방해하는 것에 그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A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피고 B의 선의항변 [배척]

피고 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선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을 제2호증에 의하면 피고 B이 C이 지정한 G의 계좌로 2019. 10. 24.부터 2019. 10. 26.까지 합계 10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C과 수익자인 피고 B은 형제 사이인 점, ㉡ 위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C은 출국 전 한국에서는 분양대행업 등 여러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매번 사업실패를 거듭하여 여러 차례 망인으로부터 다른 상속인인 피고들에 비해 많은 돈을 융통해 갔다’는 것이고, C이 ‘지금 사정이 있어서 내 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 같이 일하고 있는 G에게 입금 해 달라’고 하여 위와 같이 G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B이 선의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후인 2019. 10. 23. 부동산②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8,9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 B에게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한편, 사해행위 취소와 그에 따른 가액배상은, 이 사건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로 상실한 책임재산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 가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부동산② 중 C의 상속지분 가액(㉣)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그중 더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상속지분 가액 52,857,142원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가 된다.

가	피보전채권액	㉠ 원금 및 기발생 지연손해금	㉡ 지연손해금					
	72,521,779원 (= ㉠ + ㉡)	원금	시기	종기	일수	연 이율	계산액	
		15,209,863	14,723,335	2013-03-26	2023-03-17	3644	38.99%	57,311,916
나	부동산㉡의 2/7 지분 가액	· 부동산㉡의 2022. 4. 22. 기준 시가는 185,000,000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시에도 같은 것으로 추정						
	52,857,142원	[인정근거] 이 법원의 시가감정축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 52,857,142원 = 185,000,000원 × 2/7지분(원 미만 버림)						

따라서 C과 피고 B 사이에 2019. 4. 7. 체결한 부동산㉡ 중 2/7지분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52,857,14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은 수익자로서 원고에게
52,857,1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최보원

별지